

서울특별시마포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(안)심사보고서

1999. 9. 15.

총무건설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1999년 9월 9일 마포구청장 제출
- 나. 회부일자 : 1999년 9월 9일
- 다. 상정일자 : 제64회 임시회 제2차 위원회 ('99. 9. 15.) 상정, 심사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- 제안설명자 : 기획예산과장 신 귀 철

가. 개정이유

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해 위임된 우리 구 보조금 관리에 필요한 사항들 중 상위법보다 규제가 심하던 규정들을 상위법 취지에 맞게 규제를 완화하여 원활한 보조사업 수행에 기여하고자 함.

나. 주요골자

-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와 관련하여 "지체없이"를 삭제 (안 제13조)
- 보조사업자의 구청장에 대한 신고사항 중 "사업을 폐지하였을 때"를 삭제 (안 제16조)
- 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 중 "보조사업의 성공 가능성이 없을 때" 와 "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무를 태만히 하였을 때"를 삭제 (안 제17조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(전문위원 박 관 수)

- 동 개정조례안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8조 및 동 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사무 중 마포구비를 재원으로 하는 보조금의 교부

대상, 교부방법, 교부신청, 교부결정 및 사용등에 관한 규정중 상위법령에 근거도 없이 행정편의상 규제된 내용과 판단기준이 모호하여 재량행위의 가능성이 있는 내용등을 행정규제정비의 일환으로 정비·보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사료됨.

- o 주요개정골자는 안 제13조제1항에 보면 지체없이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였으나 상위법령에는 지체없이 제출하여야 하는 근거규정이 없고, 안 제16조제2호의 규정인 “사업을 폐지하였을 때”는 현행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이미 사전승인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각각 삭제하고, 안 제17조제2호의 규정인 “보조사업의 성공가능성이 없을 때”는 성공가능성의 판단기준이 모호하여 재량행위의 가능성 이 있으며, 안 제17조제6호의 규정인 “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무를 태만히 하였을 때”는 법령에 구체적인 근거도 없이 규제하는 내용이므로 각각 삭제하려는 것으로. 동 개정조례안은 정부의 규제개혁 정비 시책에 의하여 불필요한 규제를 정비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없 음

5. 토론요지 : 없 음

6. 심사결과 : 원 안 의 결

7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
8. 기타사항 : 없 음

서울특별시마포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(안)

의안	
번호	

제출년월일 1999. 08.

제출자 마포구청장

1. 개정이유

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해 위임된 우리구 보조금 관리에 필요한 사항들 중 상위법보다 규제가 심하던 규정들을 상위법 취지에 맞게 규제를 완화하여 원활한 보조사업 수행에 기여하고자 함.

2. 개정 주요골자

- 가.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와 관련하여 “지체없이”를 삭제 (안 제13조)
- 나. 보조사업자의 구청장에 대한 신고사항 중 “사업을 폐지하였을 때”를 삭제 (안 제16조)
- 다. 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 중 “보조사업의 성공 가능성이 없을 때”와 “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무를 태만히 하였을 때”를 삭제 (안 제17조)

3. 개정근거

-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('99. 05. 24 법률 제5982호) 제38조
-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('98. 2. 28 대통령령 제15703호) 제17조

4. 조례(안) : 별첨

서울특별시마포구보조금관리조례증개정조례(안)

서울특별시마포구보조금관리조례증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3조 제1항중 “지체없이”를 삭제한다.

제16조중 “제2호”를 삭제하고, “제3호 및 제4호”를 “제2호 및 제3호”로 한다

제17조중 “제2호”를 삭제하고, “제3호 내지 제5호”를 “제2호 내지 제4호”로 하며, “제6호”를 삭제하고 “제7호”를 “제5호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(안)
<p>제13조(보조사업의 실적보고) ①보조사업자는 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<u>지체없이</u> 그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</p> <p>② “생 략”</p> <p>제16조(신고) 보조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“생 략” 2. <u>사업을 폐지하였을 때</u> 3. ~ 4. “생 략” <p>제17조 (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)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“생 략” 2. <u>보조사업의 성공가능성이 없을 때</u> 3. ~ 5. “생 략” 6. <u>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무를 테만히 하였을 때</u> 7. “생 략” 	<p>제13조(보조사업의 실적보고) ①보조사업자는 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(<u>삭 제</u>) 그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</p> <p>② “현행과 같음”</p> <p>제16조(신고)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1. “현행과 같음”</p> <p>2. <u>“삭 제”</u></p> <p>2. ~ 3. “현행 3. ~ 4와 같음”</p> <p>제17조 (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)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1. “현행과 같음”</p> <p>2. <u>“삭 제”</u></p> <p>2. ~ 4. “현행 3. ~ 5.와 같음”</p> <p>6. <u>“삭 제”</u></p> <p>5. “현행 7.과 같음”</p>